

제358회 임시회  
2017. 8. 30.(수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#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윤은희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8월 21일
- 회부일자 : 2017년 8월 24일

3. 제정이유

-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공급, 임산부 건강에 기여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모유수유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

4. 주요내용

- 가. 모유수유 및 무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 수립 (안 제3조)
- 나. 모유수유실, 모유착유실 설치·운영 및 권장에 대한 규정 (안 제4조)
- 다. 영유아의 부모에게 임신 시기부터 출산 후까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, 정보 제공 및 교육에 대한 규정 (안 제5조)
- 라. 모유수유실, 모유착유실 설치·운영,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, 홍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(안 제7조)
- 마. 충청북도 모유수유주간(8.1.~7.)을 정하고,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토록 규정 (안 제8조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주요 내용 검토

#### ○ 본 조례안은,

- 상위법령인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고 임산부의 건강에 기여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공공기관 등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,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, 홍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모유수유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.

#### 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3조는 매년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, 시행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4조는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·운영 또는 권장에 관한 규정으로, 그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.
  1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본청, 직속기관 및 사업소, 도의회 청사
  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도가 설치한 공사
  3. 「충청북도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
  4. 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임산부 휴게시설
  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- 안 제5조, 제6조는 영유아 부모에게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정보 제공, 교육 및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자료조사와 홍보에 대해 규정함.
- 안 제8조는 세계모유수유주간에 맞춰 매년 8월1일부터 7일까지를 모유수유주간으로 정하고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실시토록

규정한 것으로, 충청도에서 이 기간 동안 모유 수유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행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## 나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모유수유문화 확산 및 실질적 모유 수유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상위법령인 「모자보건법」 등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,
- 절차상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, 도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제출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<참고자료> 충청도 내 모유수유실 설치 현황

연번	기관명	담당부서	설치규모(㎡)	비고
1	충청북도	청년지원과	32.8㎡	모아사랑방
2	충북산림환경연구소	산림환경과 전시관운영팀	12㎡	
3	청남대관리사업소	운영과	10.56㎡	
4	충북기업진흥원	기획총무팀	10㎡	여성휴게실 겸용
5	청주의료원	총무팀(소아청소년과)	15㎡	
6	충주의료원	총무팀(소아청소년과)	16㎡	
7	여성재단	경영지원팀	8.52㎡	
8	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	시설전산팀	21㎡	여성휴게실 겸용